

산주의 산림투자 인식에 관한 연구

- 강원도지역을 중심으로 -
서영완¹⁾ · 최종천²⁾

Study on Relating a Government Support to the Private Forest Management

- The Case Study of Private Forest Owners in Kangwon Region -
Yeong-Wan Seo¹⁾ and Jong-Cheon Choi²⁾

요 약

일반산주와 임업후계자·독립가의 산림투자 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임·독립가가 일반산주보다 산림투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1. 일반현황의 비교에서 임·독립가가 일반산주보다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 면에서 높게 나왔으며, 직업의 경우 임·독립가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일반산주는 농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산림의 소유동기에서 임·독립가의 경우 일부상속·일부매입이 41.2%로 가장 많은 반면, 일반산주의 경우는 선대로부터의 상속이 40.9%로 가장 많았다.
3. 산림투자에 대한 산주태도에서 임·독립가가 일반산주보다 과거 5년동안 산림투자 경험과 정부지원 신청경험 모두 높게 나타났다.
4. 정부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일반산주보다 임·독립가가 정부지원 제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 제도의 실행상태에 대해서는 임·독립가와 일반산주 모두 '그저 그렇다'는 미온적인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다.

ABSTRACT

The study is focused on comparing the perception of forest investment by two types of forest owners, ordinary forest owners(OFOs) and forestry successors and model forest owners(FSMFOs). The results show that FSMFOs' perception of forest investment is relatively high compared with OFOs' perception. The details are as follows:

-
- 1) 강원대학교 대학원 삼림경영학과 : Department of Forest Management,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2)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 산림자원학부 : Division of Forest Resources, College of Forest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In the general status, the education and income levels of FSMFOs are higher than those of OFOs, and FSMFOs are engaged in various kinds of jobs while OFOs are inclined to lean toward farming.
2. Of the motives to own forests, partial-purchase and inheritance is the most of FSMFOs(41.2%) and inheritance the most of OFOs(40.9%)
3. The number of FSMFOs who had made forest investment and applied government support is more than that of OFOs.
4. FSMFOs know government support better than OFOs do, while both show lukewarmness on weather the support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rules.

Key words: forest investment, forestry successor, government support

1. 서론

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산림은 그 동안 치산정책에 힘입어 녹화는 이루어졌으나 1998년 현재 평균 임목 축적이 ha당 56.5m³이고 임도시설은 ha당 2.1m에 불과하여 선진 임업국과 비교할 때 크게 뒤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매년 목재수요량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막대한 외화를 지출하고 있어 산림을 목재의 안정적 공급기지로 구축하려는 노력은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할 입장이다. 또한 상당수의 인공림과 천연림이 갱신, 간벌 및 육림작업이 요구되는 상태에 있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자원화 정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김남균, 1992; 김종관, 1999).

특히 전체 산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은 국·공유림과 비교할 때 임업생산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산림정책상 그 의의는 매우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독자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사유림 산주는 일부 독립가와 임업후계자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며, 그 외 대부분의 사유림 산주는 규모의 영세성, 노동력, 자본, 기술 및 경영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에 의한 산림소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산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강학모 등, 1997; 장우환과 장철수, 1999; 최중천과 서영완, 1993).

정부에서는 사유림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간벌과 육림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국고 40%, 지방비 40%), 그리고 임도건설 비용의 90%(국고 50%, 지방비 40%)를 산주에게 보조하고 있다. 또한, 산림소유자의 자율적 산림경영유도와 경비절감을 위하여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대리경영제도를 도입하였다(서병수 등, 1999).

한편, 사유림은 소유주체인 산주와 정책주체인 국가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강구할 때 산주의 참여 없이는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산주의 참여가 없는 무리한 실행은 결국 사업을 불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책주체와 정책대상간의 마찰을 불러일으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산주가 산림사업 또는 산림투자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며, 현행 제도는 이들의 투자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주의 투자에 대한 인식 및 산주의 투자행동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영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일반산주와 독립가·임업후계자의 산림투자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표 1. 설문조사 개황

구 분	일반산주	임·독립가	합 계
발송량(통)	180	84	264
회수량(통)	44	52	96
회수율(%)	22.2	62.0	

II. 연구방법

1. 조사지 개황

조사 대상지는 강원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시·군별로 일반산주와 독립가 그리고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산주의 경우 10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를 대상으로 전 시·군에서 임의 추출하였으며, 임업후계자와 독립가(임·독립가)는 산림조합 강원도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2.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는 산림투자에 대한 산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주의 일반현황, 산림소유 동기, 지난 5년간의 산림투자 경험 및 산림소득 경험, 향후 산림투자 의향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의 지원정책이 산림투자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임업보조금, 임업융자, 임업세제에 대한 산주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선적인 정책지원을 받는 임업후계자 및 독립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지원을 받는 일반산주의 일반현황 및 투자인식을 비교하였다. 편의상 설문조사에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립가를 임·독립가로 구분하여 같은 부류로 취급하였는데, 이는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산주에 대한 사항은 괄호안에 표기하였다.

III. 사유림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1. 보조금 제도

산림법 제109조에서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8조 2항에서는 영림계획의 작성·변경, 시업 및 시업의 대행, 임업기술지도·조립 및 육림, 임도, 지정산림의 관리, 특수개발지역의 개발, 자연휴양림·수목원

표 2. 1999년 사업별·재원별 임업 보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계	368,738	205,595	124,783	38,360
일 반 회 계	183,504	118,963	60,434	4,107
농 특 회 계	185,233	86,632	64,348	34,253

자료: 자치단체보조금예산(확정)통지, 산림청, 1999

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7개 분야에 걸쳐 민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분야의 보조사업은 재원별로 일반회계와 농특회계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각각 1,835억원과 1,852억원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회계의 경우 조림사업과 임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을 제외한 숲가꾸기 사업이나 산림병해충 방제, 그리고 사방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에 대부분 보조되고 있으며, 농특회계의 경우 조림, 육림, 임도, 임산물 가공 및 유통 등 민간분야에 대부분 보조되고 있다.

산림분야 중 주요사업별 보조사업대상과 보조기준을 보면 사방사업, 자연휴양림조성, 지방수목원조성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상호 분담하여 실행하고 있다. 한편, 조림, 육림, 간벌, 임도사업과 같이 실수요자가 민간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이를 교부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액을 포함하여 실수요자인 산주에게 재교부함으로써 보조사업이 수행되고 있는데 산주는 해당 사업별로 일정한도의 자력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2. 임업금융 제도

산림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은 산림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조제도가 핵심적인 유인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조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장기저리의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 산림분야에 소요되는 금융지원은 1954년부터 60년대 중반까지 양묘자금이 융자된 적이 있었고 1967년 산림청이 발족됨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의 예산에 임업자금항목을 설정하여 양묘단지확보 및 기타 임산물 유통시설분부에 융자되었다.

산림개발법이 1972년에 제정·공포되고 이 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산림개발기금은 1974년부터 조림사업분야에 주로 융자되기 시작하여 산림조합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농협이 대출사무를 취급하였다. 그후 1980년 산림법을 개정하여 종래의 산림개발법을 흡수하고 또한 산림조합법을 제정, 산림조합에서 산림개발기금을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1981년부터 산림조합에서 융자금의 대출업무를 취급하여 오고 있다.

지난 5년동안 임업분야에 있어 융자금 지원규모는 1994년의 89,238백만원에서 1997년 136,550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1998년에는 110,305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 1998년 현재 재원별 융자현황을 살펴보면 농특회계가 43,124백만원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업진흥기금이 40,281백만원(36.5%), 농안기금이 23,900백만원(21.7%)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재원별 융자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임업진흥기금	재특자금	농업단체 자금(양묘)	농안기금	농특회계
1994	89,238	19,000	-	-	37,899	32,339
1995	103,973	22,743	-	-	37,804	43,426
1996	123,370	31,748	-	-	46,877	44,745
1997	136,550	44,485	2,500	-	26,133	63,432
1998	110,305	40,281	3,000	-	23,900	43,124

자료 : 임업통계연보, 산림청, 1999

3. 세제지원 제도

임업은 생산기간이 초장기적이고 소득발생이 간단적이며 다년간 누적되어 온 것을 한꺼번에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생산의 누적수확에 누적세율을 적용한다면 과중한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세제상으로 배려되고 있다.

임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세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산림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그리고 종합토지세 등이 임업에 가장 깊게 관련되어 있다. 우선 산림소득세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에서 임목을 벌채하였거나, 임목을 매각 또는 양도하였을 때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제를 말한다(소득세법 제 23조). 그러나 내국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밖에 소득세법 제23조와 29조에서는 산림소득의 공제를 그리고 동법 제43조에서는 산림소득의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등 산림소득세의 경감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산림에 대하여서도 재산취득의 원인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³⁾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세액의 산출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대상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산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의 경우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야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 7천㎡ 이내의 산림지와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99만㎡ 이내의 산림지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상속세법 제11조의 3).

3) 상속세는 재산상속, 遺贈 또는 死因贈與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 또는 受遺者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국세를 말하며,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에게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 가액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셋째, 종합토지세⁴⁾로서 산림의 경우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을 인가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자연환경지구내의 임야,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내의 임야 등은 과세표준액의 0.1%의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 243조의 16 제3항). 이는 법정제한림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산림법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산림을 임업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4. 임·독립가 지원 제도

우리 나라의 사유림 경영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1971년에 시작된 독립가 육성제도와 1989년에 시작된 임업후계자 육성제도, 그리고 1974년 시작된 사유림 협업경영사업이 있다. 이 중에서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한 법적·제도적으로 육성정책에 비하여 사유림 협업경영사업의 경우 지원대책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⁵⁾.

독립가와 임업후계자 육성제도를 살펴보면, 현재 독립가는 크게 개인독립가와 법인독립가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개인독립가는 다시 산림 소유 규모 및 조림실적에 따라 모범 독립가, 우수 독립가, 자영 독립가로 세분된다. 이들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한 인정요건 및 인정권자를 보면 표 4와 같다.

4) 종합토지세란 소유자 단위로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한 다음 소유토지의 가액에 따라 응능(應能)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조세를 통해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는 한편, 토지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기회를 봉쇄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세제이다.

5) 사유림 협업경영사업은 1990년 협업체가 임협의 협업(지도)계 조직으로 흡수된 후 경영체 기능이 약화되고 지도기능만 남아있어 사유림 기술지원 제도로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장우환과 장철수, 1999).

표 4. 임·독립가 인정요건

구 분		인 정 요 건	인정권자	
독립가	개인	모범	소유산림 3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100ha이상인 자	산림청장
		우수	소유산림 100ha 이상 또는 용재림 50ha이상 또는 유실수 20ha이상 조림한 자	도지사
		자영*	소유산림 20ha이상 또는 용재림 10ha이상 또는 유실수 5ha이상 조림한 자	시장·군수
	법 인	소유산림 5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300ha이상인 자	산림청장	
임업후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가의 자녀 - 10ha이상의 산림소유자(직계존속, 형제·자매소유 포함) - 10ha이상 국·공유림 분수·대부자 - 고교이상 임업분야 학과 졸업자로서 5ha이상 산림소유자 - 전문대 이상 임업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임업경영자 또는 경영희망자 - 3ha이상 산림소유자로서 산림종묘, 분재소재, 버섯, 야생화 등 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희망자 	시장·군수	

* 자영독립가의 인정요건은 1999년부터 소유산림을 30ha에서 20ha로 완화하였음.

자료 : 산림청,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일람, 1998

이러한 독립가 육성정책은 1971년 최초로 201명의 독립가가 지정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80년 57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1997년 현재 334명으로 감소하였다. 1980년부터 1997년까지 유형별 독립가 지정현황을 보면, 우

수독립가의 경우 227명에서 110명으로 117명이 감소하여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으며, 자영독립가의 경우 257명에서 154명으로 103명이, 그리고 모범독립가의 경우 76명에서 56명으로 20명이 감소하였다. 반면에 임업후계자의 경우 1990

표 5. 연도별 독립가 현황

연 도	독 립 가					임업후계자
	계	모 범	법 인	우 수	자 영	
1980	573	76	13	227	257	-
1986	484	71	12	192	209	-
1990	443	67	11	166	199	139
1995	336	56	13	115	152	266
1996	335	57	14	113	151	337
1997	334	56	14	110	154	429

자료 : 산림청,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일람, 1998

표 6.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한 임업진흥기금의 융자조건

사 업 명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비율	사업량	융자규모
	연리 (%)	거치 (년)	상환 (년)			
독립가 육성	3	5	10	사업자 당 3억원 이내(30백만원까지는 신용대출)	100명	50억
임업후계자 육성	3	5	10	사업자 당 2억원 이내(30백만원까지는 신용대출)	100명	50억

자료 : 산림청,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일람, 1998

표 7. 교육수준

교육수준	무학	국졸	중졸	고졸	대졸	합계
응답자수 (명)	0 (1)	7 (11)	11 (11)	19 (17)	15 (4)	52 (44)
비율 (%)	0 (2.2)	13.5 (25.0)	21.2 (25.0)	36.5 (38.6)	28.8 (9.1)	100 (100)

년 139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1997년 429명으로 269명이나 증가하였다⁶⁾.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한 임업진흥기금의 융자제도를 살펴보면, 1998년 현재 독립가와 임업후계자에 대한 융자조건은 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조건이 같다. 반면에 융자규모를 보면, 독립가의 경우 100명에 대하여 50억원을 1인당 3억원 이내에서, 임업후계자의 경우 100명에 대하여 50억원을 1인당 2억원 이내에서 융자해 주고 있어 융자규모에 있어서 다소 차별을 두고 있다.

명(36.5%)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과 중졸 그리고 국졸이 각각 15명(28.8%)과 11명(21.2%) 그리고 7명(13.5%)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산주의 경우 고졸이 17명(38.6%)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졸과 국졸이 각각 11명(25.0%)이었고 대졸은 4명(9.1%)에 불과하였다. 즉,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임·독립가가 일반산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직 업

직업을 묻는 질문에 임·독립가의 경우 전체 응답자 52명 중 농업에 종사한다고 답한 산주가 36.5%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26.9%, 임업 21.2%, 회사원 5.8%로 나타났으며, 일반산주의 경우 59.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영업 6.8%, 공무원과 임업이 각각 4.5%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독립가와 일반산주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산주가 가장 많았으나, 임·독립가는 비교적 고른 분포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일반산주의 경우 농업에 많이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산주의 산림투자인식

1. 일반현황

1) 교육수준

임·독립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9

6) 독립가의 수는 감소한 반면 임업후계자의 수가 증가한 이유는 독립가와 임업후계자의 연령구성이나 노동여건, 경영규모, 경영의욕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장우환과 장철수, 1999).

표 8. 직 업

직 업	임업	농업	자영업	공무원	회사원	기타	합계
응답자수 (명)	11 (2)	19 (26)	14 (3)	1 (2)	3 (0)	4 (11)	52 (44)
비 율 (%)	21.2 (4.5)	36.5 (59.1)	26.9 (6.8)	1.9 (4.5)	5.8 (0)	7.7 (25.0)	100 (100)

표 9. 월평균소득

소득(만원)	50 이하	50~100	100~130	130~150	150~200	200이상	합계
응답자수 (명)	12 (16)	10 (12)	8 (6)	5 (3)	4 (2)	13 (5)	52 (44)
비 율 (%)	23.1 (36.4)	19.3 (17.3)	15.4 (13.6)	9.6 (6.8)	7.7 (4.5)	25.0 (11.4)	100 (100)

3) 평균소득

월 평균소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임·독립가의 경우 2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산주가 13명(25.0%)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만원 이하 12명(23.1%), 50~100만원 10명(19.3%), 100~130만원 8명(15.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산주의 경우 50만원 이하가 16명(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50~100만원 12명(17.3%), 100~130만원 6명(13.6%), 200만원 이상은 5명(11.4%)으로 전반적으로 임·독립가의 평균수입이 일반산주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소유동기 및 소유이유

1) 소유동기

산림의 소유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임·독

립가의 경우 일부상속·일부매입이 41.2%로 가장 많은 반면, 일반산주의 경우는 선대로부터의 유산이 40.9%로 가장 많았다. 자신이 직접 매입한 경우는 임·독립가가 35.3%로 일반산주의 20.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독립가의 산림경영활동이 보다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소유이유

산림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양쪽 모두 '산림소득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산주가 각각 44.3%와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재산증식을 위해서라고 답한 산주는 일반산주의 17.0%, 임·독립가의 18.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한편, 묘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임·독립

표 10. 소유동기

소유동기	선대유산	자신의 매입	일부상속·매입	기타	합계
응답자수 (명)	12 (18)	18 (9)	21 (15)	0 (1)	51 (44)
비 율 (%)	23.5 (40.9)	35.3 (20.5)	41.2 (34.1)	0 (2.3)	100 (100)

표 11. 소유이유

소유이유	산림소득 기대	묘지용지 사용	노후휴양지 이용	재산증식	농사를 위해	초지·과수원 조성	기타	합계*
응답자수 (명)	31 (18)	6 (13)	5 (2)	13 (8)	4 (0)	4 (3)	7 (3)	70 (47)
비율 (%)	44.3 (38.3)	8.6 (27.7)	7.1 (4.3)	18.6 (17.0)	5.7 (0)	5.7 (6.4)	10.0 (6.4)	100 (100)

* 복수응답

가의 경우 8.6%에 지나지 않은 반면, 일반산주의 경우 27.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에 대한 관심이 정부지원 집단에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산림투자에 대한 산주의 태도

1) 산림투자 경험

과거 5년동안 산림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냐는 질문에 대하여 임·독립가의 경우 80.8%가 있다고 답한 반면, 일반산주의 경우 59.1%가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산림투자를 위해 정부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산주는 임·독립가가 64.7%에 달하는 반면 일반산주는 27.9%에 불과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정부의 지원정책

2) 산림투자 동기

지난 5년간 산림사업을 한 적이 있는 산주들을 대상으로 사업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임·독립가와 일반산주 모두 저축수단이라고 답한 산주가 50.9%와 40.4%로 가장 많았고 수익성과 시·군의 권유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지원 때문이라고 답한 산주는 양쪽 모두 예상보다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산주들이 자신들의 산림사업이 정부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표 12. 과거 5년간의 산림투자 활동현황

구분	산림사업 경험			신청 경험		
	있다	없다	합계	있다	없다	합계
응답자수 (명)	42 (26)	10 (18)	52 (44)	33 (12)	18 (31)	51 (43)
비율 (%)	80.8 (59.1)	19.2 (40.9)	100 (100)	64.7 (27.9)	35.3 (72.1)	100 (100)

표 13. 사업동기

사업동기	수익성	저축수단	정부지원	시·군 권유	기타	합계*
응답자수 (명)	7 (8)	28 (19)	3 (2)	4 (5)	13 (13)	55 (47)
비율 (%)	12.7 (17.0)	50.9 (40.4)	5.5 (4.3)	7.3 (10.6)	23.6 (27.7)	100 (100)

* 복수응답

표 14. 소득경험이 있는 경우 소득원

소득원	목재생산	표고·버섯	종실생산	산채생산	농용자재	기타	합계
응답자수 (명)	23 (10)	6 (7)	0 (1)	1 (0)	0 (0)	2 (2)	32 (20)
비율 (%)	71.9 (50.0)	18.8 (35.0)	0 (5.0)	3.1 (0)	0 (0)	6.3 (10.0)	100 (100)

것으로 판단된다.

3) 산림소득원

지난 5년간 산림으로부터 소득경험이 있는 산주들의 소득원을 묻은 결과 일반산주의 경우 목재생산과 표고·버섯생산으로 부터의 수입이 각각 50.0%와 35.0%를 차지하였으며, 임·독립가의 경우 71.9%와 18.8%로 나타났다. 양쪽 모두 이 두 사업으로부터의 산림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산림소득원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투자여건

산림의 투자여건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임·독립가는 33.4%가 일반산주는 41.0%가 '크게 향상된다'와 '향상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부정적인 반응은 임·독립가의 경우 29.4%를 보인 반면, 일반산주는 10.1%를 보였으며 '모른다'는 반응은 임·독립가의 경우 5.9%로 일반산주의 15.4%보다 낮게 나타났다.

5) 산림투자의 장애요인

산림사업을 방해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임·독립가의 51.8%와 일반산주의 54.8%가

임업의 저수익성과 장기성을 가장 큰 문제로 거론하였으며 자금부족과 임업기술 및 정보부족 그리고 타용도로의 이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업의 장기성과 저수익성은 많은 관련문헌에서 흔히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유병일 외, 1991; 최종천과 서영완, 1993).

4. 산주의 정부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1) 정부지원에 대한 인지도

산주의 산림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 즉 보조금 제도, 융자 제도 그리고 세제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산주보다 임·독립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보조금제도와 융자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임·독립가는 각각 65.4%와 71.2%에 달하는 반면 일반산주는 47.7%와 54.5%에 불과하였으며, 세제지원 제도에 대하여 임·독립가는 44.0%가 안다고 답한 반면 일반산주는 22.7%에 불과하였다. 또한, 위의 3가지 지원 제도 가운데 세제지원 제도에 대하여 임·독립가와 일반산주 모두 다른 두 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투자여건

투자여건	크게 향상	향상	그저 그렇다	나빠진다	크게 나빠짐	모른다	합계
응답자수 (명)	1 (3)	16 (13)	16 (13)	11 (2)	4 (2)	3 (6)	51 (39)
비율 (%)	2.0 (7.7)	31.4 (33.3)	31.4 (33.3)	21.6 (5.1)	7.8 (5.1)	5.9 (15.4)	100 (100)

표 16.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 이유

이유	저수익성	장기성	자금부족	임업기술 및 정보부족	다른 용도로의 이용	기타	합계*
응답자수 (명)	35 (17)	35 (17)	27 (11)	25 (9)	13 (6)	1 (2)	135 (62)
비율 (%)	25.9 (27.4)	25.9 (27.4)	20.0 (17.7)	18.5 (14.5)	9.6 (9.7)	0.7 (3.2)	100 (100)

* 복수응답

표 17. 정부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도	보조금 제도			융자 제도			세제 제도		
	안다	모른다	합계	안다	모른다	합계	안다	모른다	합계
응답자수 (명)	34 (21)	18 (23)	52 (44)	37 (24)	15 (20)	52 (44)	22 (10)	28 (34)	50 (44)
비율 (%)	65.4 (47.7)	34.6 (52.3)	100 (100)	71.2 (54.5)	28.8 (45.5)	100 (100)	44.0 (22.7)	56.0 (77.3)	100 (100)

이로 미루어 볼 때 일반산주의 경우 임·독립가에 비하여 정부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산주들에 대한 국가정책의 홍보활동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부지원 제도의 평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지원 제도가 산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임·독립가와 일반산주 모두 보조금 제도, 융자 제도 및 세제지원 제도에 대하여 '그저 그렇다'는 미온적인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다. 보조금에 대하여 '매우 잘 시행되고 있다' 혹은 '잘 시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은 임·독립가와 일반산주 모두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혹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반응보

표 18. 지원제도 시행여부

구분		매우 잘 시행	잘 시행	그저 그렇다	잘 시행되지 않음	전혀 시행되지 않음	합계
		응답자수 (명)	4 (2)	17 (9)	19 (21)	11 (6)	0 (4)
보조	비율 (%)	7.8 (4.8)	33.3 (21.4)	37.3 (50.0)	21.6 (14.3)	0 (9.5)	100 (100)
	응답자수 (명)	3 (1)	14 (3)	21 (23)	10 (8)	2 (4)	50 (39)
융자	비율 (%)	6.0 (2.6)	28.0 (7.7)	42.0 (59.0)	20.0 (20.5)	4.0 (10.3)	100 (100)
	응답자수 (명)	2 (1)	7 (3)	18 (21)	15 (7)	8 (6)	50 (38)
세제	비율 (%)	4.0 (2.6)	14.0 (7.9)	36.0 (55.3)	30.0 (18.4)	16.0 (15.8)	100 (100)

표 19.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투자분야

투자분야	조림	육림	간벌	임도	기타	합계
응답자수 (명)	14 (6)	23 (11)	24 (14)	25 (15)	3 (2)	89 (48)
비율 (%)	15.7 (12.5)	25.8 (22.9)	27.0 (29.2)	28.1 (31.3)	3.4 (4.2)	100 (100)

다 높게 나타났다.

용자 제도에 대하여 임·독립가는 긍정적인 반응(32.0%)이 부정적인 반응(24.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산주는 부정적인 반응(30.8%)이 긍정적인 반응(10.3%)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제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함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보조금 제도의 경우 양쪽 모두 평균이상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용자 제도에 대해서는 일반산주가 평균이하의 평가를, 세제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평균이하의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산림투자 분야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산림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임·독립가는 52명 중 82.7%가 있다라고 답하였으며 일반산주 또한 44명 중 70.5%가 있다라고 답하였다. 지난 5년동안 산림투자를 경험한 산주의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임·독립가의 경우 80.8%였으므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일반산주의 경우 59.1%였으므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지원이 있을 경우 산림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임·독립가의 경우 임도, 간벌 그리고 육림이 각각 28.1%, 27.0%, 25.8%로 나타났으며, 일반산주의 경우도 임도, 간벌, 육림이 31.3%, 29.2%, 22.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4) 기술지도

지난 5년간 산림청이나 산림조합이 주관하는 기술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임·독립가의 경우 26.9%가 전혀 없다고 답하였으며, 있다라고 답한 산주 모두 1~5회의 기술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산주의 경우 65.1%는 전혀 받은 적이 없었으며, 1~5회의 기술교육을 받은 산주가 27.9%, 6~10회가 4.7%, 16~20회도 2.3%에 달하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일반산주에 대한 기술지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술지도를 받은 산주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이 산림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은 결과 임·독립가의 경우 71.1%, 일반산주의 경우 66.7%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IV. 결 론

이제까지 강원도 지역의 일반산주와 임·독립

표 20. 기술지도

기술지도	전혀없음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이상	합계
응답자수 (명)	14 (28)	37 (12)	0 (2)	1 (0)	0 (1)	0 (0)	52 (43)
비율 (%)	26.9 (65.1)	71.2 (27.9)	0 (4.7)	0 (0)	0 (2.3)	0 (0)	100 (100)

가의 산림투자 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현황의 비교에서 임·독립가가 일반산주보다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 면에서 높게 나왔으며, 직업의 경우 임·독립가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일반산주는 농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림의 소유동기에서 임·독립가의 경우 일부상속·일부매입이 41.2%로 가장 많은 반면, 일반산주의 경우는 선대로부터의 유산이 40.9%로 가장 많았다. 산림의 소유 이유에서 임·독립가와 일반산주 모두 산림소득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산주가 가장 많았으며, 반면에 재산증식을 위해서라고 답한 산주는 일반산주와 임·독립가 모두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셋째, 산림투자에 대한 산주태도에서 임·독립가가 일반산주보다 과거 5년동안 산림투자 경험과 정부지원 신청경험 모두 높게 나타났다. 산림사업 경험이 있는 산주들의 사업동기는 임·독립가와 일반산주 모두 저축수단이라고 답한 산주가 가장 많았고, 산림으로부터 소득원 또한 목재생산과 표고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양쪽 모두 산림소득원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림의 투자여건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임·독립가가 일반산주 보다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하였다.

넷째, 산주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보조금 제도, 용자 제도, 세제 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일반산주보다 임·독립가가 정부지원 제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 제도의 실행상태에 대해서는 임·독립가와 일반산주 모두 '그저 그렇다'는 미온적인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다.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산림투자를 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산주는 임·독립가의 경우 82.7%, 일반산주의 경우 70.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지난 5년동안 산림투자를 경험한 산주의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임·독립가의 경우(80.8%)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일반산주(59.1%)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임·독립가의 73.1%가 지난 5년간 산림청이나 산림조합이 주관하는 기술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 반면, 일반산주의 경우 34.9%에 불과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임·독립가는 일반산주보다 임업투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임·독립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홍보가 일반산주보다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일반산주의 경우도 정부지원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많은 산주가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된다.

V. 인용 문헌

1. 강학모, 강성연, 안종만, 이상현. 1997. 산림경영협업체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식동향. 한국임학회지 86(2):233-240.
2. 김남균. 1992. 산주의 산림투자인식과 사유림 투자유인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7pp.
3. 김종관. 1999. 21세기 사유림정책 제언. 산림 10:36-41.
4. 백을선. 1983. 사유림의 경영개선방안에 관하여 -전남지역 독립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6pp.
5. 산림청. 1998. 산림법령편람. 336pp.
6. _____. 1999. 임업통계연보.
7. _____. 1999. 농림사업시행지침서. p.1891~2072.
8. _____. 1998. 산지자원화계획의 성과와 반성. p.377~456.
9. _____. 1999. 지방자치단체보조금예산(확정)통지. pp140.
10. 서병수, 이상현, 강학모. 1999. 부채산주 소유 산림의 경영실태에 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7(2):19-31.
11. 서영완, 최종천. 1999. WTO에 대비한 임업분야의 정부보조금제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지 제19호: 16-27.

12. 안현철. 1983. 농산촌 영세사유림 소유자의 경영의식에 관한 연구. 진주농업전문대학 논문집. 21:141-153.
13. 유병일, 이석연, 송영근. 1991. 사유림진흥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임업연구원 임업시험 연구보고 5-1: 3-157.
14. 장우환, 장철수. 1999. 사유림 협업경영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396. 14-27.
15. 정주상, 박은식, 김규현. 1996. 협업체 운영에 대한 참여산주들의 인식과 정책적 추진실태에 관한 분석. 한국임학회지 85(3) : 487-495.
16. 최종천, 서영완. 1993. 임업진흥지역의 경영실태 및 임야소유권분석. 임업경제연구회 임업경제 1:1-15.